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 근거 마련 〉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82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 근거 마련	2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4.

3. 회부연월일 : 2025.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 정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 및 임차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Ⅲ. 검토의견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 ----- <u>기관의</u> ----- ----- ----- ----- ----- -----.
<신설> 1.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1.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7조¹⁾는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중앙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함.

1)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 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사업]

구 분	사 업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	•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운영 지원 - 어린이집 등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지원, 부모모니터링 지원, 대체교사 지원, 취약보육 지원,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보육교직원 교육 및 컨설팅 -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연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보수교육 실시 위탁) • 보육교직원 상담 등 정서·심리 지원 •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영유아 지원	•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지원 • 도서·장난감 등 제공 및 대여 • 영유아 발달·정서·심리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영유아 보호자(부모) 지원	• 보호자 교육 - 가정 내 양육환경 점검, 부모 양육태도 점검, 자녀권리존중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영유아 발달 이해 교육, 양육 스트레스 관리 등 • 양육 관련 상담 • 맞춤형 양육 정보 안내 • 시간제보육 제공 • 가정양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보육 및 양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지역맞춤형 시책 사업	•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

* 사업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료: 교육부

□ 한편, 2025년도 12월 말 기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18개의 시·도 및 121개의 시·군·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참고자료 1: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및 설치 현황 >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22. 6. 22.)하고, 국비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지방비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되, 설치비의 경우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 시 국비 50%(서울 국비 20%), 지방비 50% 범위에서 건축비,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고, 국비 지원없이 지역의 상황·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25.12.31.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		
				센터 개소수(A)	시·군·구 수(B)	설치율(A/B)
계	140	1	18	121	228	53.1%
중앙	1	1	-	-	-	-
서울	26	-	1	25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	100.0
부산	13	-	1	12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사하구, 서구	16	75.0
대구	4	-	1	3 동구, 수성구, 달성군	8	37.5
인천	8	-	1	7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동구	10	70.0
광주	3	-	1	2 동구, 서구	5	40.0
대전	3	-	1	2 대덕구, 서구	5	40.0
울산	6	-	1	5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5	100.0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			
				센터 개소수(A)		시·군·구 수(B)	설치율(A/B)
세종	1	-	1	-		-	-
경기	34	-	1	22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수원시동부,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하남시	21	104.8
경기 북부		-	1	10	가평군, 과천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 동두천시	10	100.0
강원	4	-	1	3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18	16.7
충북	6	-	1	5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영동군	11	45.5
충남	4	-	1	3	아산시, 천안시, 서산시	15	20.0
전북	8	-	1	7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 익산시, 전주시, 남원시, 김제시	14	50.0
전남	4	-	1	3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22	13.6
경북	7	-	1	6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포항시, 구미시	23	26.1
경남	6	-	1	5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합천군	18	27.8
제주	2	-	1	1	서귀포시	2	50.0

* 자료: 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

□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부지확보 및 임차비용 부담으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지연되거나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지역 간 보육환경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현행법 제7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228개 시·군·구 중 121개소만 운영 중으로 설치율이 아직 53.1%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을 통해 더 안정적으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의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도 법률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시·도 및 시·군·구는 대부분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무상임대 형태로 설치하고 있으며, 유상임대의 경우라도 위탁운영 기관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현행법 체계에서도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가 가능함을 고려할 필요도 있겠음.

- 현재 운영 중인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121개소)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①단독 설치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받은 건물(무상, 51개소)에 운영 중이고, ②복합시설 설치의 경우 유상임대(5개소) 및 무상임대(65개소)가 있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25.12.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설치 현황					운영 방법	
	개소수	단독		복합		직영	위탁
		유상	무상	유상	무상		
합계	140	0	55	13	72	13	127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1	0	0	1	0	1	0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18	0	4	7*	7	1	17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21	0	51	5**	65	11	110

※ 주: 단독(단독건물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설치·운영), 복합(건물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공간을 함께 사용), 유상(유상 임대 사용 건물), 무상(무상 사용 건물)

* 7(시도재산 3, 민간재산 4) / ** 5(시도재산 1, 시군구재산 2, 민간재산 2)

※ 자료: 교육부(시·도 제출자료)

- 참고로, 국가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 및 [별표]에 따라 법률로 가능하나, 동 법률에 따른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참고자료 2: 국·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공유재산 사용의 특례 관련 법령 >

□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한편, 재정경제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례 적용을 위한 공익성은 충족되나,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 중이므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는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7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2025. 12. 23.>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25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1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요

가. 정의

-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나.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놀이 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시간제보육 서비스, 놀잇감 대여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

다.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 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

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현황

(‘25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시·도	시·군·구
계	140	18	121
중앙	1	-	-
서울	26	1	25
부산	13	1	12
대구	4	1	3
인천	8	1	7
광주	3	1	2
대전	3	1	2
울산	6	1	5
세종	1	1	-
경기	34	2	32
강원	4	1	3
충북	6	1	5
충남	4	1	3
전북	8	1	7
전남	4	1	3
경북	7	1	6
경남	6	1	5
제주	2	1	1

마.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지원

1) 운영비 지원기준

- 중앙센터: 국비 100%
- 지방센터: 지방비 100%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
- 지원내역
 - 인건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 운영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등), 재산조성비(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등

2) 설치비 지원기준

- 지원규모: 국비 50%, 지방비 50%(서울은 국비 20% 지원)
 - 2025년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시 건축비: 1,676천원/㎡
※ 신축시 건축비는 선정 당시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된 신축시 건축비를 따름
 - ※ 설치비 지원 금액에 설계용역비 포함
 -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매입 건물의 면적에 따라 신축 시 지원 단가에 준하는 금액 지원
 - 기자재비: 개소당 2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신축(매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
※ 국공립 어린이집 병행 설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과 별도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 가능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가. 설치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부장관이 설치·운영(법 제7조)
 -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시행령 제16조의3)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
 -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상호합의에 따라 정함
-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재정 여건 등으로 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어려운 시·군·구의 경우 인근 5개 이내 시·군·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 센터의 위치, 운영비용 부담비율 및 기타 운영세부기준 등은 시·군·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시·도지사가 교통 여건 등 접근성, 보육 수요자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해 결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설치(분소를 포함)가 완료된 지자체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설치 완료 1개월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관리, 업무 시스템 활용 등을 위해 센터 설치 결과를 교육부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함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

1) 입지조건

- 이용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부지에 설치해야 함
-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 시설, 유해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함

2) 구조 및 설비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시행령 제12조)
 - － 건물구조, 시간제 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은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함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준용하고, 「건축법」, 「소방방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함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1) 위탁 근거법령 및 수탁기관

- 국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법 제51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3)
- 수탁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 －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수탁기관 선정

- 업무위탁 대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업무위탁 시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기타 수탁내용 및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

- 신청서류(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 심사 시 해당 안전의 '직접적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함

수탁기관 선정절차

- ① 수탁기관 모집 공고 ⇒ ② 사업설명회 개최 ⇒ ③ 신청서 및 서류 접수 ⇒ ④ 심사 및 심의
⇒ ⑤ 선정결과 공표 ⇒ ⑦ 수탁기관 위탁계약 체결 ⇒ ⑧ 수탁기관 위탁계약증서 발급

3) 수탁기관 계약 체결

- 업무위탁은 5년으로 하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 조정 가능
-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별도의 센터 운영관련 약정서를 체결
-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재위탁절차

- ① 정기 또는 필요시 관리감독 및 재위탁 결정 ⇒ ② 위탁기간 확인 ⇒ ③ 재위탁계획 수립 ⇒
④ 수탁기관 공고 ⇒ ⑤ 신청서 및 서류 접수 ⇒ ⑥ 심사 및 선정 ⇒ ⑦ 선정결과 공표 ⇒
⑧ 수탁기관 재위탁계약 체결 ⇒ ⑨ 수탁기관 위탁계약증서 발급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절차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통합 매뉴얼' 참고

-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이 변경 되더라도 종사자의 고용 승계·유지 권고
- 센터장은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수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 다만, 별도로 작성된 센터 운영관련 위탁 약정서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름

4) 위탁의 취소

-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수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기타 수탁자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자료: 2025년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지침) pp. 436-445 편집 재구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또는 「항만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2025. 12. 23.>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연 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125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	사용료등의 감면	2026. 12.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에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삭제 <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6.1.22. 기준)